September 2026

NEWSLETTER

기업법 연구센터 | Corporate Law Research Center

CONTACT

변호사 **김종욱**
T: 02.772.4421
E: jongwook.kim@leeko.com

변호사 **김태정**
T: 02.772.4915
E: taejung.kim@leeko.com

변호사 **문제윤**
T: 02.6386.1956
E: jeyoun.moon@leek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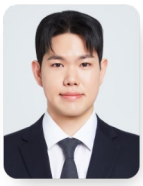

변호사 **고대웅**
T: 02.6386.1968
E: daewoong.ko@leeko.com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무 (3) – 운영 방식 및 외부전문가 선임

지난 두 차례의 뉴스레터 (1) 뉴스레터 (2) 에 이어, 이번 마지막 순서에서는 국내에서의 논의 및 운영 실무 중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 방식 및 소집 · 활동 빈도, 외부전문가 선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 방식 및 소집 · 활동 빈도

1)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의 **설치 시기**에 관해 거래조건 등이 사실상 결정되어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이어서는 안 되고, **거래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신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상설 여부에 관해서는 특별위원회의 임의적 자문기구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특정 사안을 위해 **비상설**로 설치하거나, 기존 사외이사회 내지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 **상설** 기구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소집 · 활동 빈도**에 대해, **거래 목적의 정당성, 거래 조건의 공정성, 거래 절차의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관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의 빈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증권신고서 심사 시 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인지 비상설기구인지 여부와 설치 또는 임무 부여 이유, 의사결정 주체 및 일자를 명시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 설치일이나 임무 부여 시점에 거래조건 미정 여부 등 당사회사 간 거래 진행 경과가 어떠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설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집 및 활동 빈도와 관련해서도 각 회차별 개최 일자, 안건, 주요 논의 내용,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 거래 초기 단계부터 설치하여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횟수로 개최될 필요가 있음

특별위원회는 **거래 추진 여부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신속히 설치**되어야 하고, 공시서류에도 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검토 과정을 꼼꼼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 및 활동 빈도와 관련하여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 사례상으로는 **대부분 3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보이나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거래의 규모와**

이해상충의 정도에 비추어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횟수로 개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면서 거래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각 단계별로 변경된 조건의 공정성을 다시 심의하고 그 검토 과정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 여부 파악부터 위원 선임, kick-off, 단계별 심의 및 최종 의견 도출에 이르는 **단계별 예시 일정표를 미리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외부전문가 선임

1) 법무부 가이드라인 및 금융감독원의 실무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충실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임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특별위원회 스스로 자문기관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 이사회가 선임한 자문기관이 높은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전문가로는 거래 관련 제반 법적 위험,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거래 목적의 정당성 · 조건의 공정성 · 절차의 적절성 및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외부전문가들의 독립성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전문가**와, 거래가격 산정 시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시장 상황 조사, 잠재적 매수자 물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전문가**의 선임을 고려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세무, 환경, 인사·노무 등의 전문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활용 내역을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만큼이나 상세한 공시 대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성명, 전문분야, 선임 일자, 주요 업무, 계약기간, 비용뿐만 아니라 당해 전문가를 선임한 구체적 이유와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및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 등 독립성 · 전문성 충족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법률 및 재무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 업무 수행자 수 및 투입 시간, 특별위원회에 전달된 검토의견서나 법률의견서의 내용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시사점 : 외부전문가 선임 시에도 독립성 및 전문성 검토가 필요하고, 활동 내역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함

외부전문가의 경우 회사 또는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특별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재무전문가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무가 존재하는 합병, 중요한 영업 · 자산양수도 등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감사의 동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외부평가기관을 선임하여 거래가액 · 비율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외부평가기관은 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이거나 거래 가액 산정에 관여한 재무전문가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법령상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부평가기관을 직접 선임**하여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면 독립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본시장법상 평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무자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나, 독립성의 경우 대상 거래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전문성의 경우 해당 거래 관련 자문 이력과 경험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간 당사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있는지, 당사회사에 기존에 자문 ·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후 해당 사안의 개별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가감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과 기업법 연구센터는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